

부산지방법원 2021. 9. 3 선고 2021나43514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1. 9. 3 선고 2021나43514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1. 26 선고 2019가단808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유상호

피고, 항소인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중현

변론 종결 2021. 7. 23.

판결 선고 2021. 9. 3.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1. 26. 선고 2019가단8083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E과 피고들 사이에 2019. 7. 24. 각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41,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 공동피고 D조합에 대한 부분은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분리·확정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D조합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조윤정

판사홍준서

판사권현영

별지